

공 고

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.

2017. 07. 12.

수 원 시 장 안 구 청 장

1. 도로위치 : 『별첨』 현황도와 같음
2. 도로구간 :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161-47번지
3. 도로길이 : 2m
4. 도 로 폭 : 4m
5. 도로면적 : 1.0 m²
6. 지정동기 :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161-47번지 외 1필지상 건축허가
7. 지정근거 :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
8. 편입토지

위 치	지 번	지 목	공부면적	편입면적	제외면적	소유자	비고
율 전 동	161-47	대	168.0m ²	1.0m ²	167.0m ²	전○옥	-

9. 공고기간 : 2017.07.12. ~ 2017.08.10.(30일간)
10. 공고방법 :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
11. 기타사항

위 도로지정 공고 관련서류는 장안구청 건축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소관부서	장안구 건축과	담당자 직/성명	시설8급 이승근	전화번호	031-228-5458
------	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

위 치 도



현 황 도

